

그랜드코리아레저(주) -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

그랜드코리아레저(이하 “GKL”이라 한다)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업무협약은 “GKL”과 “개발원”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

- ① “GKL”은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의 서비스 이용, 생산품 구매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.
- ② “개발원”은 GKL에 적합한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연계 및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한다.
- ③ 양 기관은 취약계층 자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, 사업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정보·자료의 교류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.

제3조(비밀유지)

“GKL”과 “개발원”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.

제4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한다.
- ②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업무협약에 대한 합의 개정 또는 임의 해지할 수 있다. 단, 업무협약의 개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·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본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며, "GKL"과 "개발원"과의 구체적인 권리·의무에 대한 추가 협조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및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.

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2년 11월 02일

GKL 그랜드코리아레저

사장 김영산

김영산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원장(代) 배완복

배완복